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01

발의연월일: 2021. 12. 30.

발 의 자:이주환·권명호·김도읍

김성원 · 김예지 · 김용판

박대수 · 박덕흠 · 전봉민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주 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공실률이 35~4 5%에 달할 정도로 상권의 규모가 작고,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 법령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특례 대상 지역으로 규정 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 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작게 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는 예외 없이 부과하여 특례 대 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매장면적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여야 하는 모순된 측면이 있고,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 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
| | 관한 특례) 제44조에도 불구하 |
| | 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 |
| |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를 적용 |
| | 하지 아니한다. |
| |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 |
| | <u>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u> |
| |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 |
| | 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 |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
| |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
| |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 |
| | <u>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u> |
| |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 |
| | 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
| |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 |
| | 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